

Korea's Largest & Asia's Leading Trade Fair

GREEN ENERGY EXPO 2012

2012. 3. 28(수) ▶ 30(금) / EXCO(엑스코) www.energyexpo.co.kr

그린에너지엑스포 사무국 | 우) 702-712 대구광역시 유통단지로 90 EXCO
Tel : 053-601-5375 Fax : 053-601-5372 E-mail : energy@energyexpo.co.kr

참 가 신 청 서

회사명			
대표자		Website	
주 소			
담당자(직위)		E-mail	
TEL		FAX	
전시품목			

		신청내역		단 가	신청금액
면적 사용료	면적임대료	/부스		1,800,000 원	원
	옥외특설전시장	/부스		1,100,000 원	원
설치비	기본타입	/부스		300,000 원	원
	프리미엄타입	/부스		550,000 원	원
전기	단상220V(60Hz)	()kW	()kW/24시간	40,000원 (24시간은 kW당 10,000원추가)	원
	삼상220V(60Hz)	()kW	()kW/24시간		원
	삼상380V(60Hz)	()kW	()kW/24시간		원
전화	국 내	대		80,000 원	원
	해 외	대		150,000 원	원
급·배수		개소		150,000 원	원
압축공기		개소		150,000 원	원
LAN		PORT		100,000 원	원
Barcode Reader		EA		200,000 원	원
디렉토리 유료광고		표 2 및 대면		1,500,000 원	원
		표 3 및 대면		1,000,000 원	원
		내지면		700,000 원	원
소 계					원
부가가치세(VAT)					원
Total					원

※ 참가신청 후 계약금(총 참가금액의 50%)은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후 5일 이내 납부하시고, 잔금 50%는 2012년 1월 12일까지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납부 : 우리은행 2632-935-4318215 [예금주 : (주)엑스코] ※ 송금시, 반드시 '회사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의 전시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계약금과 입금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사무국 귀중

참가안내

1.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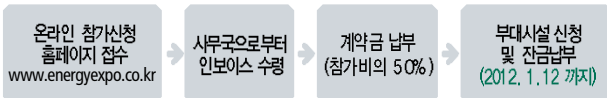
2012년 1월 12(목)까지 (선착순 접수)

2. 부스 사용료(부가세별도)

구분	단가	규격	
면적사용료	면적임대료	₩1,800,000	9㎡(3m×3m)
	옥외 특설 전시장	₩1,100,000	9㎡(3m×3m)
설치비	기본타입	₩300,000	9㎡(3m×3m)
	프리미엄 타입	₩550,000	9㎡(3m×3m)

※ 프리미엄 타입은 2부스(18㎡)이상 신청가능합니다.

3. 부스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 부스배정 :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 성격에 의거 주최측에서 배정 (제3조 부스배정 참조)

	조기신청 할인	재참가할인	3년 연속참가 할인
할인률	10%	5%	5%
기준	9월 30일까지	2011년 참가업체	2009~2011 참가업체

구분	금액	납입방법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인보이스 수령 후 5일 이내 납부
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2012. 1. 12(목) 까지 납부

4. 제공내역

독립부스	기본 Type	프리미엄 Type
전시면적만 제공하며, 출품업체가 직접 부스를 디자인 및 시공	9m(3m×3m)/2.4mH 벽체 칸막이, 바닥 파이프 시스템, 상하칸판, 부스번호 기본 조명 (형광등2개, 스포트라이트3개), 인네스스크/의자조(업체당), 전기 1kW(업체당)	18m(3m×6m)/3mH, 벽체 칸막이, 바닥 파이프 시스템, 상하칸판, 부스번호, 전기배선2구, 콘센트2개, 기본조명 형광등4개, 조명 등3개, 인네스스크 / 의자조, 상탑 테이블 1개, 의자4개, 전기 1kW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의)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원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EXCC", "한국에너지신문사"를 말한다.
4. '전시회'라 함은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2012)"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VAT를 포함한 총 합계금액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신청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납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설치기간 이전인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전체 전시회의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직재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품 출품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전대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후 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2년 1월 12일(목)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의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시, 주최자는 원상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2개월 전인 2012년 1월 27일까지 수령된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납부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통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2개월 후(2012년 1월 27일)에 주최자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전시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 및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을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EXCC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쟁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